##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0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9.

발 의 자:홍기원·민형배·김성회

박정현 • 이정문 • 권칠승

송옥주·부승찬·조정식

한정애 • 조승래 • 김윤덕

정을호 · 손명수 · 양부남

이기헌 · 노종면 의원

(17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,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에 서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,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'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·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'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고,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제10조).

법률 제 호

###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·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·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	제5조(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
정) ① (생 략)	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	②
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20. (생 략)	1. ~ 20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1.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ㆍ
	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
	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
	<u>항</u>
<u>21.</u> (생 략)	<u>22.</u> (현행 제21호와 같음)
③ ~ ① (생 략)	③ ~ ①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접경지역발전협의회) ①	제10조(접경지역발전협의회) ① -
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	
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	
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	
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	
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	
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ㆍ
	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
	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
	<u>항</u>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